

정보전산원규정

1999.05.01.제정	2001.03.01.일부개정	2002.09.01.일부개정	2006.03.01.일부개정
2008.11.01.일부개정	2009.03.01.일부개정	2011.04.18.일부개정	2014.03.28.일부개정
2022.09.26.일부개정	2023.09.01.일부개정		

<정보전산원>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원은 동명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정보전산원(이하 “본 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09.3.1, 2011.4.18, 2014.3.28.)

제2조 (삭제 2022.9.26)

제2장 조직 및 업무

제3조(목적) 본 원에는 정보시스템에 관한 연구, 교육, 대학교 정보화 개발업무와 정보통신 및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정보전산 운영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8, 2014.3.28.)

제4조(조직) ① 본 원에는 정보개발팀, 정보인프라팀을 둔다. (개정 2009.3.1, 2011.4.18., 2014.3.28., 2022.9.26., **2023.9.1.**)

② (삭제 2008.11)

③ (삭제 2008.11)

제5조(업무) ① 본 원에는 본 대학교의 건학이념과 학칙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교육 및 연구지원기관으로서, 학문연구 활동에 필요한 정보자료를 제공한다. (개정 2014.3.28.)

② (삭제 2008.1.1.)

③ (삭제 2006.3.1.)

제6조(직무) 본 원에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9.3.1., 2014.3.28., 2022.9.26.)

1. 정보인프라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업무

2. 통합데이터센터(IDC) 운영에 관한 업무
3. 학사행정·업무용 DB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
4. 교내 전산망 및 외부망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
5. IT헬프데스크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
6. 도메인 및 IP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
7.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8. 전산 소프트웨어 개발 전략수립 및 추진에 관한 업무
9. 학사행정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과 유지보수 관리 업무
10. 각종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산통계와 분석에 관한 업무
11. 학사행정 외주 소프트웨어 관리와 운영에 관한 업무
12.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제7조(운영위원회구성) ① 위원회는 정보전산원장, 정보개발팀장, 정보인프라팀장의 당연직 위원과 총장이 임명하는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9.26.)

② 위원장은 정보전산원장이 된다. (신설 2022.9.26.)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22.9.26.)

제8조(운영위원회소집과 임무) 운영위원회는 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6.3.1., 2014.3.28., 2022.9.26.)

1. 대학정보화를 위한 정보전산원의 기본계획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2. 대학정보화 촉진을 위한 정보전산원의 운영지원 및 표준화 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보자원의 도입과 관리, 그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삭제 2006.3.1.)

제3장 이용과 관리

제10조(이용자) 본 원 전산정보통신 기자재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28.)

1. 본 대학교 재학생
2. 본 대학교 교직원
3. 기타 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 (개정 2014.3.28.)

제11조(운영시간) 본 원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1, 2014.3.28.)

1. 「교직원복무규정」에 따른다.
2.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단축 및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3.28.)

제12조(휴일) 본 원의 휴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1, 2014.3.28.)

1. 「교직원복무규정」에 따른다.
2.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휴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3.28.)

제13조 삭제 (2011.4.18.)

제14조(통제) ① 원장이 지정한 전산 정보통신시설 기자재는 관계실무자 이외에는 임의로 취급할 수 없으며, 이용자는 통제구역에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14.3.28.)

② 대외비업무 이상을 취급할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만이 통제구역에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14.3.1.)

제4장 재정

제15조 (삭제 2006.3.1.)

제16조 삭제 (2011.4.18.)

부 칙

- ①(시행일) 본 규정은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준용) 본 규정에 정한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준하고, 기타 특별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 ③(개정) 본 규정은 정보전산원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정 할 수 있다.
- ④(폐지규정) 본 규정 시행이전의 정보전산원에 관한 규정은 본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기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5조 제1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0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